

1. 개정 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26.5.12. 공포, '26.11.13. 시행)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 (시행령 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30조제2항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2.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관련 비영리법인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8. 그 밖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 의 업무) (생 략)	제15조(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 의 업무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30조제2항에 따라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 호의 청소년단체
	2.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 조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 립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관 련 비영리법인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 익법인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
	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u>제2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u> <u>지원 관련 비영리단체</u> 8. <u>그 밖에 이주배경청소년 지</u> <u>원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u> <u>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u> <u>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u> <u>하는 법인 또는 단체</u>
--	---